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4호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9 8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	3
○ 규	칙 제 9 8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 규	칙 제 9 8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4
○ 규	칙 제 9 8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
○ 규	칙 제 9 9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35
○ 규	칙 제 9 9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38

공 고

○ 공	고 제 2 0 6 3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3
○ 공	고 제 2 0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5
○ 공	고 제 2 0 6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2
○ 공	고 제 2 0 7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1
○ 공	고 제 2 0 8 9 호 남동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71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72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4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74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76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78
○ 보 건 소 공 고 제 1 2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고 시

○ 고	시 제 1 6 0 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82
○ 고	시 제 1 6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84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청소과의 분장사무란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	------------------------------

별표 1 중 평생교육과의 분장사무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남동구평생학습관 관리에 관한 사무
-----	--------------------

별표2-1 중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분장사무란의 제19호를 삭제하고, 제20호부터 제23호를 각각 제19호부터 22호까지로 하며,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6호 및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별표 2-1 중 남동다문화사업소의 분장사무란의 제2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동 행정복지센터의 분장사무란 중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8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제36호부터 제55호까지로 하며, 제58호부터 제61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62호를 제56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본청의 사무분장표 (제8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청 소 과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매립지 반입	관련 사무	
	4.	환경미화원·공무직(동현장인력)	관리 및 단체(임금)교섭	
	5.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 추진	
	6.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보관대 등)	
	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무	
	8.	해안쓰레기 정비에	관한 사무	
	9.	적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0.	각종 청소장비	관리 운영	
	11.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무	
	12.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수급 관리	
	13.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4.	대형 소각장 건설	추진 및 운영	
	15.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	
	16.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7.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무	
	18.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폐기물 및 재활용	에 등 관한 사무	
	20.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	
	21.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2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	
	23.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수수료 및 세척비 관리	
	2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2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관한 업무	
	26.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27.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28.	폐기물처리신고 및	지도점검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1.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업무	

	32.	사업장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업무
	33.	사업장폐기물(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 신고 및 지도점검
	34.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관한 업무
	35.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올바로시스템 지원 업무
	36.	사업장폐기물 법정교육 및 통계에 관한 업무
평 생 교 육 과	1.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대학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초·중·고등학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보조금(사립유치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혁신학교 지원 관리에 관한 사무
	10.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1.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3.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관련 사무
	15.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6.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7.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
	22.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3.	남동구평생학습관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1]

사업소의 사무분장표(제13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남 동 공 단 지원사업소	1.	각종	민원서류(민원24)	신청 및 발급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3.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접수처리
	4.	지방세(납세·독촉·체납)	고지서	발급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6.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7.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8.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무
	9.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	사무
	10.	도로, 인도, 하수관로(맨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1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12.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건축물대장	관리	사무
	15.	공원 및 녹지	의	유지관리
	16.	가로수		유지관리
	17.	남동공단	재난관리(제설작업)	업무
	18.	남동공단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19.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0.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21.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2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23.	공단내민원업무(건축,건설,환경,기타민원)		
	24.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별표 2-1]

사업소의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남동다문화 사 업 소	1.	남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2.	남동하모니센터	시설관리운영	
	3.	북한이탈주민센터	시설관리운영	
	4.	남동사활린센터	시설관리운영	
	5.	다문화가족관리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영주귀국 사활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가정의날, 세계인의날행사운영(각종다문화·외국인관련행사)		
	9.	결혼중개업관리 및 운영지도(인·허가,지도감독)		
	10.	거주외국인지원 및 민원사무		
	11.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12.	남동건강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관리	
	13.	건강가정만들기지원사무(가족돌봄나눔,가족교육,가족상담, 가족문화사업)		
	14.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상담,교육,생활문화,사례관리사업)		
	1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6.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17.	소 사무 및 예산회계업무		
	18.	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19.	기타 지역사회 연계 후원 사업		
	20.	센터 내 동향보고 업무		

[별표 4]

동의 사무분장표(제15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동 행 정 복지센터	1.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동 재산 및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직 및 비상근무		
	5.	통·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구정홍보 및 구 주관 행사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10.	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		
	1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1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3.	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4.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15.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		
	16.	민방위대 편입 지원 신고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		
	17.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18.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9.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급여신청, 복지증명서 발급		
	20.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22.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23.	서비스 연계 업무		
	24.	결식아동접수·신청		
	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무		
	26.	기타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및 관리		
	28.	매·화장 및 묘지개장 신고처리		
	29.	공공근로 신청에 관한 사무		
	30.	가정사업계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처리 등		
	31.	산불 예방 및 감시		
	32.	도로 점검 및 순찰		
	33.	도로 환경 미화원 관리		
	3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5.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36.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37.	남동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38.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39.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0.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1.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
42.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43.	자활사업 연계
44.	정부양곡 신청 접수
45.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4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47.	노인 교통카드·효도카드 발급
48.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4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50.	아동급식 신청 접수
51.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52.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53.	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접수
54.	문화나눔행사
55.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6.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재위임하는 사무 중 2019.1.1.자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업무 등 구로 재이관되는 사무에 대해 구 본청, 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조정
- 남동복지관 명칭변경 및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사무명 및 사무분장 조정

□ 주요내용

- 구 본청·사업소·동 사무분장 조정 (안 별표1, 별표2-1, 별표4)
 - 남동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서이관 : 남동다문화사업소 ⇒ 평생교육과
 - 명칭변경 : 남동복지관 ⇒ 남동구평생학습관
 -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업무 삭제 (남동공단사업소, 동)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업무 삭제 (동)
 -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사무 삭제 (남동공단사업소, 동)
 - 도로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무 삭제 (남동공단사업소, 동)
 - 소규모 공원·녹지·쉼터 관리 사무 삭제 (동)
 - 소규모 보도·인도·하수구 정비 사무 삭제 (동)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별표2”,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별표3”과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2019.1.1.자로 도시경관과 소관사무(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가 구로 재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 폐지(안 별표2)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 폐지 (안 별표3)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평생교육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평생학습 추진체계 관련업무						
가.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평생학습도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기안					○
다. 평생학습도시 인정 추진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안		○			
마.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사업	기안			○		
바.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공모	기안			○		
사.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기안			○		
아.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홍보	기안		○			
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및 진흥	기안			○		
차. 기타 주요 평생교육사업계획 수립	기안		○			
카. 기초자치단체내 평생학습 현황 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기안		○			
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가.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기안				○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추진사항		기안				○
3.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						
가.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항 관리	기안			○		
4.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업무						
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획.운영 지원	기안			○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	기안		○			
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위·해촉	기안		○			
마.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			
바. 평생학습축제 개최	기안					○
5.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관리						
가.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안		○			
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			
다. 강사은행 및 평생학습동아리 등록	기안		○			
라. 평생학습 포럼 및 워크숍	기안		○			
6. 교육기관 지원 및 보조사무						
가.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혁신학교 지원 및 관리		기안				○
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기안				○	
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마. 교육경비보조금 점검 및 정산	기안			○		
바. 지역인재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사.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안				○	
아.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기안				○	
자. 졸업생 표창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7. 무상급식 지원사업						
가. 무상급식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사무		기안		○		
다. 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무상급식 점검 및 정산	기안			○		
8.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						
	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 점검 및 정산	기안			○		
9.	교복나눔 행사 지원사업						
	가. 교복나눔 행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교복나눔 행사 지원사업 점검 및 정산	기안					○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점검 및 정산	기안			○		
11.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업무						
	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결과보고	기안			○		
12.	아동취학						
	가. 취학사무 집행요령 시달	기안		○			
	나. 취학아동명부.학교목록 수령 협조	기안		○			
13.	도서관 정책사업						
	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도서관 신축 건립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기안					○
	다. 도서관 교류 협력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개최	기안				○	
	마. 구립도서관 인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바.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안		○			
	사. 도서관 조례.규칙 개정 및 제정	기안					○
	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기안		○			
14.	독서문화진흥사업						
	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독서문화진흥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다. 남동구독서문화상 시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5.	작은도서관 등록 관리						
	가.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관리						
	(1)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접수	기안		○			
	(2) 작은도서관 등록증 교부	기안		○			
	(3) 작은도서관 지도 관리	기안		○			
	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심의협의	기안		○			
	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1) 작은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보조금집행 및 정산보고	기안		○			
	(3) 보조사업결과 정산검사 및 처리	기안		○			
	라. 작은도서관 협의회 협력 관리	기안		○			
	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기안		○			
16.	구립도서관 운영 일반						
	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나. 시설 임대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시설 대관운영	기안		○			
	라. 자료복사 등 수수료 징수	기안		○			
	마. 도서관 세입수입 처리	기안		○			
	바.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						
	(1) 홈페이지 구축 계획 및 변경	기안					○
	(2)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안		○			
17.	구립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가. 기획공연.전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안					
	(1)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2)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강사 선정 및 계약	기안		○			
	(4) 강사수당 지급	기안		○			

	(5) 프로그램 개발 및 교양강좌 선정	기안		○			
	나. 홍보						
	(1) 홍보유인물 제작	기안		○			
	(2) 홍보 유인물 배포 및 관리	기안		○			
	다.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1) 자원봉사신청접수 및 실적 부여	○					
	(2) 자원봉사실비수당 지급	기안		○			
18.	구립도서관 자료 관리						
	가. 도서관 자료확충						
	(1) 도서관 자료 구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자료의 수서.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기안		○			
	(3) 정기간행물 구독.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증자료 수증 및 처분	기안		○			
	(5) 자료통계 작성 및 관리	기안		○			
	나. 자료 열람업무						
	(1) 각종 자료열람실 운영 관리	기안		○			
	(2) 관외대출회원 등록 및 관리	기안		○			
	(3) 자료열람실 장서관리	기안		○			
	(4) 반납 연체도서 관리	기안		○			
	(5)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기안		○			
	(6)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기안		○			
	다. 통합도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 통합 및 상호대차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통합 및 상호대차서비스 협의 및 시행	기안		○			
19.	도서관 전산관리						
	가. 도서관 정보화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산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도서관 통신 및 네트워크 관리	기안		○			
20.	도서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전산보안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산보안 활동 및 심사분석	기안			○		
	다. 전산보안 교육	기안		○			
	라. 전산보안 지도점검	기안		○			
	마. 개인정보보호제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바. 개인정보보호제도 교육	기안		○			
	사.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지도점검	기안		○			
	아.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21.	남동구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						
	가. 남동구평생학습관(시설, 경비) 운영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남동구평생학습관(시설, 경비) 관리 위탁 기관(업체) 관리 감독	기안			○		
	다. 공공시설물(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유지 관리	기안		○			
	라.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마. 시설물 안전 점검	기안		○			
	바. 교육실(강당) 운영 및 관리	기안	○				

[별표 3]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소 장
		담당 자	담당	
1.	기획관리			
	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보고	기안		○
	(2)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기안		○
	(3)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예산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요구	기안		○
	(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기안		○
	(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기안		○
	(4) 예산 집행 및 결산	기안		○
	다.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기안		○
	라. 감사 관련 사항			
	(1) 감사자료 작성	기안		○
	(2)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안		○
2.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가.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지정·변경 요청	기안		○
	나.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수행	기안		○
	다. 소송 진행상황 보고	기안		○
3.	일반행정			
	가.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1) 직원 사무 분장	기안		○
	(2) 직원 근무성적 평정	기안		○
	(3)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기안		○
	(4) 여론 및 동향 보고		기안	○
	나. 복무에 관한 사항			
	(1) 휴가, 외출, 지참, 조퇴	기안		○
	(2) 당직 및 초과근무 명령	기안		○
	(3) 출장명령	기안		○
	다. 보안업무			
	(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기안		○
	(2) 관리대장 정리	기안		○
	라. 구의회 관련 사항			
	(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제출	기안		○
4.	회계관리			
	가. 경리에 관한 사항			
	(1) 일상경비 출납	기안		○
	(2) 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	기안		○
	(3) 원천징수 불입 및 연말정산	기안		○
	(4)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5) 회계공인 관리	기안		○
	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재물현황 보고	기안		○
	(2) 재물조사 결과 보고	기안		○
	(3)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기안		○
	(4) 관급 자재 수불	기안		○

	(5) 비품 및 소모품 관리	기안	○	
	라.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기안		○
	마. 각종 회계대장 관리	기안		○
	바.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기안		○
	사. 청사 유지관리	기안		○
	아. 차량관리			
	(1) 차량 정비 점검	기안		○
	(2)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	기안	○	
	(3)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	기안	○	
5.	문서관리 및 민원행정			
	가. 문서 관리			
	(1) 문서 보존 및 이관	기안		○
	(2) 공인관리	기안		○
	(3)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	기안		○
	(4)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 발급	○		
	(5)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접수 및 지방세 고지서 재발행	○		
6.	공익근무요원관리	기안		○
7.	환경관리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기안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1)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기안		○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1) 악취배출시설 신고	기안		○
	(2)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가) 시설변경	기안		○
	(나) 상호 및 대표자변경, 시설일체 폐쇄신고	기안		○
	(3) 악취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기안		○
	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안		○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기안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설기준 변경 신청	기안		○
	마. 특정공사 신고 관리			
	(1) 특정공사 사전 신고	기안		○
	(2) 특정공사 변경 신고	기안		○
	바. 정화조 폐쇄신고	기안		○
8.	건축관리			
	가. 건축허가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			
	(1) 건축허가(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기안		○
	(2)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기안		○
	나. 건축신고			
	(1)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기신고	○		
	(2)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3) 건축물 사용승인	기안		○
	(4) 건축신고(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기안		○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6) 취하원 및 취소원 처리	○		
	(7) 취소 및 반려처리	기안		○
	다. 가설건축물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기안		○
	라. 공작물 축조신고	기안		○
	마.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	기안		○
	바.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업무			
	(1)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정정 및 전환, 합병 신청	기안		○
	(2) 건축물대장 분리, 결합 및 지번변경 신청	기안		○
	(3) 건축물 소유권 변경, 정정 신청	○		

9.	불법광고물 정비(유동광고물) 및 과태료 부과,징수			
10.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			
	가. 공원시설유지관리			
	(1) 근린공원 유지관리	기안		○
	(2) 공원점용 허가, 공원사용 협의	기안		○
	나. 시설녹지			
	(1) 시설녹지 유지관리	기안		○
	(2) 시설녹지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기안		○
	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1)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기안		○
	(2) 수목피해변상금 부과·징수	기안		○
	라. 공원 및 녹지 위법행위 단속	기안		○
11.	도로유지관리			
	가. 20m 이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나. 도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 착공 및 준공	기안		○
	라. 남동공단 재난관리(우기대비 및 동절기 제설계획)	기안		○
12.	청소행정			
	가. 대형폐기물처리신청및수거	○		
	나. 공무원(도로환경미화원,사업소현장인력) 작업구역 배치 및 청소 작업지시	기안	○	
	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기안		○
	라.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기안		○
	마. 무단방치쓰레기 수거	○		
13.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 도로조명시설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나. 가로등, 보안등 설계 시공 및 감독	기안		○
	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라.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납부	기안		○
	마.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정기 및 일상점검	기안		○
	바. 도로조명 유지보수(보수작업일지)	기안	○	
	사. 도로조명 자재관리(자재수불부)	기안	○	

남동다문화사업소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소 장
	담당자	담당	
1. 기획관리			
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보고		기안	○
(2)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기안		○
(3)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예산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요구	기안		○
(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기안		○
(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기안		○
(4) 예산 집행 및 결산	기안		○
다.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기안		○
라. 감사 관련 사항			
(1) 감사자료 작성	기안		○
(2)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안		○
2. 일반행정			
가.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1) 직원 사무 분장	기안		○
(2) 직원 근무성적 평정	기안		○
(3)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기안		○
(4) 여론 및 동향 보고	기안		○
나. 복무에 관한 사항			
(1) 휴가, 외출, 지참, 조퇴	기안		○
(2) 당직, 특근명령, 초과근무	기안		○
(3) 출장명령	기안		○
다. 보안업무			
(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기안		○
(2) 관리대장 정리	기안		○
라. 구의회 관련 사항			
(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제출	기안		○
3. 회계관리			
가. 경리에 관한 사항			
(1) 원천징수 불입 및 연말정산	기안		○
(2)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3) 회계공인 관리	기안		○
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재물현황 보고	기안		○
(2) 재물조사 결과 보고	기안		○
(3)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기안		○
(4) 관급 자재 수불	기안		○
(5) 비품 및 소모품 관리	기안	○	
라.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기안		○
마. 각종회계대장관리	기안		○
바.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기안		○
사. 청사 유지관리	기안		○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리 및 운영지도			

	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리	기안		○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및 일반	기안		○
	라.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및 관리	기안		○
	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관리	기안		○
5.	거주외국인 지원 및 민원사무			
	가. 거주외국인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기안		○
	다.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기타 거주외국인 지원 및 일반	기안		○
	마.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6.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북한이탈주민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일반	기안		○
	다.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및 일반	기안		○
	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8.	결혼중개업 관리 및 운영지도			
	가. 결혼중개업 신고 및 변경 신고	기안		○
	나. 결혼중개업 지도감독(행정처분)	기안		○
	다. 결혼중개업 일반 및 관리	기안		○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동 장
	담당 자	담당	
1. 기획관리			
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보고		기안	○
(2)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기안		○
(3)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예산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요구	기안		○
(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기안		○
(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기안		○
(4) 예산 집행·결산	기안		○
(5)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기안		○
다.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기안		○
라. 통계조사(인구주택총조사)	○		
마. 감사 관련 사항			
(1) 행정감사자료 작성	기안		○
(2)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안		○
2.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나. 자치위원 위·해촉		기안	○
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관리			
(1)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기안	○
(2)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일반행정			
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1) 직원 사무 분장		기안	○
(2) 직원 근무성적 평정		기안	○
(3)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기안	○
(4) 여론 및 동향 보고	기안		○
(5) 반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 통·반 명칭 및 구역지정	기안		○
(7) 체육행사	기안		○
(8)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기안		○
(9) 동 특수시책 추진	기안		○
(10) 구정홍보(홈페이지) 및 주 주관 행사개최·지원	기안		○
나. 복무에 관한 사항			
(1) 휴가, 외출, 지참, 조퇴	기안		○
(2) 당직, 특근명령, 초과근무	기안		○
(3) 출장명령	기안		○
다.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관리			
(1) 통·반장 및 각종 자생단체회의 운영	기안		○
(2) 통·반장, 각종 단체원 위·해촉	기안		○
라. 보안업무			
(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기안		○
(2) 관리대장 정리	기안		○
마. 구의회 관련 사항			

	(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제출	기안		○
4.	회계관리			
	가. 경리에 관한 사항			
	(1) 일상경비 출납	기안		○
	(2) 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	기안		○
	(3) 원천징수 불입	기안		○
	(4)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안		○
	(5)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6) 회계공인 관리	기안	○	
	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기안		○
	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재물현황 보고	기안		○
	(2) 재물조사 결과 보고	기안		○
	(3)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기안		○
	(4) 관급 자재 수불	기안		○
	(5) 비품 및 소모품 관리	기안	○	
	라.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기안		○
	마. 각종 회계대장 관리	기안	○	
	바.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기안	○	
	사. 동청사 유지관리	기안		○
	아. 차량 관리			
	(1) 차량 정비 점검	기안	○	
	(2)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	기안	○	
	(3)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	기안	○	
5.	민원행정			
	가. 문서 관리			
	(1) 문서 수발	기안	○	
	(2) 문서 보존 및 이관	기안		○
	(3) 공인 관리	기안	○	
	(4)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기안		○
6.	주민등록 및 인감			
	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신고 수리	○		
	(2) 주민등록 이의신청	기안		○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고 수리	○		
	(4)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	○		
	(5) 전입신고수리	○		
	(6) 국외이주신고수리	○		
	(7) 등록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신고수리	○		
	(8) 주민등록 직권조치	기안		○
	(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기안		○
	(10)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기안		○
	(11) 회수, 습득, 훼손 주민등록증 처리	○		
	(12) 전출, 정정, 말소사항 통보	○		
	(13) 과태료부과·고지	기안		○
	(14) 주민등록 사실조사	○		
	(15) 주민등록 전산대사	○		
	(16)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		
	나.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기안	○	
	다. 주민등록번호부여(오류자)	기안	○	
	라. 주민등록번호부여(출생자)	기안	○	
	마. 본적지, 주민등록지의 통보사항 정리	○		
	바. 주민등록관련대장 일일결산	기안		○
	사.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변경 등) 신고수리	○		
	(2) 인감증명 발급	○		

	(3) 인감직권취소 및 부활	○		
	(4) 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 및 송부	○		
	(5) 인감대장 비치관리	○		
	(6)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대장 관리	○		
	(7)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증명 발급	○		
	아.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7.	가족관계			
	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출생신고, 사망신고 수리	○		
	(2)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고지, 징수	기안		○
	(3) 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	○		
8.	민방위			
	가. 민방위에 관한 사항			
	(1)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	○		
	(2)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	○		
	(3) 민방위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	○		
	(4)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		
	(5)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기안		○
	(6) 부상자 가료신청	기안		○
	(7) 현지 교육훈련 신청	○		
	(8) 민방위대원 거주지 이동 신고수리	○		
	(9) 민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10) 민방위의 날 훈련	기안		○
	(11)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기안		○
	(12)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기안		○
	(13)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	기안		○
	(14) 민방위대 편성	기안		○
	(15) 민방위대 심사제외	기안		○
	(16) 민방위대 동원	기안		○
	(17) 민방위 교육훈련	기안		○
	(18) 통민방위대장 지휘 감독	기안		○
	(19) 주민신고망 관리	기안	○	
	(20) 교육훈련 통지	○		
	(21)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	○		
	(22)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기안		○
	(23)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기안		○
	(24) 인력동원훈련통지 및 보고	기안		○
	(25) 자격면허 관리	○		
	(26) 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	기안	○	
	(27) 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기안		○
9.	사회복지			
	가. 복지대상자 급여 및 서비스 신청(관리)			
	(1) 후원물품 지원	기안		○
	(2)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		
	(3) 해산급여 신청	○		
	(4) 복지대상자 각종 증명서 발급	○		
	(5)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6)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기안		○
	(7)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	○		
	(8) 사회복지시설 입소 신청	기안		○
	(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기안		○
	(10) 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접수	기안		○
	(11)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		
	(12)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안		○
	(13)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신청	기안		○

	(1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	기안		○
	(15)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기안		○
	(16) 공공근로사업 신청에 관한 사무	기안		○
	(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위임사무	기안		○
	(18) 기타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	○		
	(2) 보장구교부 수리신청	○		
	(3) 자립자금대여 신청	기안		○
	(4) 장애인 등록신청	○		
	(5) 장애인 거주지이동신고	○		
	(6)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및 관리	기안		○
	(7)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식별표지 교부	○		
	(8) 장애인 실태조사	○		
	(9)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10)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기안		○
	다.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신청	○		
	(2) 노인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		
	(3)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및 관리	기안		○
	(4) 경로당 활성화 지원	기안		○
	라. 아동(영유아) 및 여성 복지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및 관리	기안		○
	(2)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		
	(3)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접수 및 관리	기안		○
	마.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사항			
	(1) 매·화장신고 및 묘지개장 신고 수리	기안	○	
	(2) 매·화장 및 개장 신고증 교부	○		
	바. 복지분과위원회			
	(1)동 복지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10.	환경정비			
	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 대형폐기물처리신청	○		
	(2) 도로환경미화원 작업구역 배치 및 청소 작업지시	기안	○	
	(3) 가정사업계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리	기안	○	
	(4)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기안		○
	(5)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의뢰	기안		○
	(6) 무단방치쓰레기 수거	○		
	(7)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공동주택제외)	○		
	나. 불법유동 광고물 단속 및 정비			
	(1)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	○		
	(2)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3) 사전통지서 발송 및 기타 통보	기안		○
11.	기타			
	가. 기타 일반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1) 학교 변경신고	○		
	(2) 학력아동 전출입 신고수리	○		
	(3) 행정정보공개	기안		○
	(4)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		
	(5)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기안		○
	(6)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		
	(7) 어디서나민원처리	○		
	(8)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기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업무 등 2019.1.1.자로 동에서 구로 재이관 되는 사무에 대해 사무분장과 연계하여 사무의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통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남동복지관 명칭변경에 따른 단위사무 수정 및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사무이관

□ 주요내용

- 구 본청, 사업소, 동 단위사무 정비(안 별표1, 3, 4)
 - 남동복지관 관리에 관한 사무
 - 단위사무 이관 (남동다문화사업소 ⇒ 평생교육과)
 - 남동복지관 명칭변경에 따른 단위사무 수정 (남동복지관 ⇒ 남동구평생학습관)
 - 사업소·동 환경정비 일부 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단위사무 폐지 및 정비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른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압류
재산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 [별지 제13호서식]

남 동 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채납처분비				
합계				

끝.

남 동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4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7제7항)
-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함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제2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옹벽·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전액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용부분 관리가 취약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전액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 보조금 지원 범위 대상 중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 대상 구체화(안 제2조제2항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8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9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희부지(지하공간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제3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징구하고”를 “제출받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타용도”를 “다른 용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8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구 분		지 원 금 액
담장철거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1면당 500,000원 최고 30,000,000원까지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일반 건축물	주차장 10면이상 개방가능한 사무실, 종교시설 등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법시설	설치비 100%, 면당 25만원, 최고 1,250만원
학 교	시설 개선	운동장 등 여윌공간을 20면이상 주차공간으로 개방 가능한 초·중·고·대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법시설 설치비용	설치비 100%, 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
역세권 아파트	· 주차장 20면이상 개방가능 한 아파트 - 역과의 도보거리 200m 이내 -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전체 주차장의 50% 미만		·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법시설	설치비 100%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1,400만원
의 무 개 방 기 간			· 2년	
기 개방 건물에 대한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건축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설치비 100%, 일반건축물 최고 300만원, 학교·역세권아파트 최고 500만원
의 무 개 방 기 간			· 2년	

3)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금 액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기타> ☐ 주차장 의무개방 20년 이상 ☐ 운영 및 관리 방식은 별도 협약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 개정
따른 보조대상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2조제6호, 별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063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 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12월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12.24. ~ 2019.01.07.
3. 공고대상 : **누8486외 1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공고기간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398	**누8486	다이너스티 3.0오토메 택시	(*)월*중*물류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49번길 33-1, 4/3(신천동)	2018.11.05 2018.11.20	2018.11.05~11.19 2018.11.20~12.04	기타	남동구 소래역동로 18 유치원 앞 골목	2018.08.29	기전폐차 사업소	032-814 -7082
2	2018-00401	**서3451	포르테	(*)세*산*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8, 수원종합공구단지 410동215호(고색동)	2018.11.05 2018.11.20	2018.11.05~11.19 2018.11.20~12.04	기타	남동구 석정로 585 주차장	2018.09.04	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8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0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 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9조)
- ‘남동구에 3년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 로 제한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삭제 (안 제10조)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1월전까지’ 에서 ‘3개월 전까지’ 로 앞당김 (안 제12조)
-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비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2203,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9조)
- ‘남동구에 3년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제한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삭제 (안 제10조)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1월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앞당김 (안 제12조)
-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대상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비함 (안 제15조)

☐ 본 문

☐ 신 · 구조문 대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따라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거쳐”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은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로”를 “요건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1월전”을 “3개월 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민·관 혼합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u>따라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거쳐</u>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 <u>따라</u> ----- ----- ----- ----- ----- ----- -.
제10조(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 <u>요건은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제10조(센터장의 자격요건) ----- ----- <u>요건은</u> ----- ----- ----- ----- ----- ---.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u>1월전</u>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 ----- ----- ----- -- <u>3개월 전</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신 설>

③ 운영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6. (생략)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④ (생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구청장-----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0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12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을 ‘7명 이내’ 에서 ‘10명 이내’ 로 변경 (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및 센터장 거주·활동영역 관련 자격요건 삭제 (안 별표1)

구분	계	센터장	6급	7급	8급	9급
현행	7	1	2	2	1	1
변경	10	1	2	2	2	3
증감	+3	-	-	-	+1	+2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절차를 개선 (안 제6조)
- 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기준 변경 (안 별표5)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2203,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 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및 센터장 거주·활동영역 관련 자격 요건 삭제 (안 별표1)

구분	계	센터장	6급	7급	8급	9급
현행	7	1	2	2	1	1
변경	10	1	2	2	2	3
증감	+3	-	-	-	+1	+2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절차를 개선 (안 제6조)
- 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기준 변경 (안 별표5)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신·구조문 대비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거쳐”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을 준용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준용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정원 및 임용 선발 자격(제3조 및 6조 관련)

구 분	인 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계	10명			
센터장	1명	서류 전형	면 접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	2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급	2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8급	2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소지한 자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9급	3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9급 이상 퇴직공무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5]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남동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등록자에 한함.	○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 교 통 비 : 4,000원 이내 - 급 식 비 : 8,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원의 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u>7명</u> 이내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정원) ----- ----- ----- <u>10명</u> ----- -----, ----- ----- -----.
제6조(직원의 임용) ① (생략) ② 센터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임하며,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운영요원 결원시 상위 직급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위 직급 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직원의 신규임용 시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u>준용한다</u> .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임기는 조례 제9조 제2항을 따른다.	제6조(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u>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따른다.</u> ----- ----- -----.

제7조(직원의 보수) ① ~ ③ (생략)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공인관리) ①·② (생략)

제7조(직원의 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에 따라 -----.

제8조(직원의 복무) -----

----- 따른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따른다.

제16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

----- 따른다.

② _____

_____따른다.

제17조(공인관리) ①·② (현행과 같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
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음)

③ -----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

----- 따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0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2월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여성의 역량강화 구현 및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6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453-5861,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 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실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포함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4.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089호

남동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서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직 종	근무장소	근무분야	응시 번호	성 명	비고
기간제 근로자	남동구 평생교육과 (서창도서관)	- 자료실 운영보조 - 상호대차 운영 지원	서창-1	김○건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제출일시 : 2018. 12. 28(금) 14:00
- 나. 제출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남동복지관 3층)
-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기본증명서 각 1부
- 라. 문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453-643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12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 10.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 0199452	남양알로에	윤**	백범로 331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4-12-3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 0199463	영성상사	김**	구월말로85번길 26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6-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 0199500	HC상사	이**	경인로524번길 11 (간석동, 영생빌딩 4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3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 0199627	천지인 장례대행	이**	동암남로26번길 39 (간석동, 청실프라자 20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12-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 0199446	이든네이처 구월지구	성**	구월로 326 (만수동, 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2-27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019	유기농전문점엔 스기빙구월점	이**	호구포로 818 (구월동, 퍼스트하임프라자 11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8-09-0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081	한국파샤 연수원	박**	석촌로 17 (간석동, 3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8-10-17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117	(주)아이에스게 이트	김**	남동서로269번길 22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8-09-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313	삼우사랑	홍**	인주대로 588 (구월동, 세정빌딩 8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08-23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564	파워휘트니스코 리아	김**	경인로 663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5-12-2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563	늘푸른B&S	김**	구월남로 148, 502동 2호 (구월동, 타워플러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5-12-2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605	미소안씨오	고**	인주대로 588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12-3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670	세라스톤 의료기	김**	백범로 371 (간석동, 동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5-12-3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 0199689	천연산삼공사	봉**	석정로 467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7-06-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5-0199 809	논현드림영양건 강관리센터	한**	논고개로123번길 17 (논현동, 아이플렉스 301, 302호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2-04-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009	국제웰빙상사	이**	남동대로 880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9-30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125	에버그린 코리아	채**	경인로 520 (간석동, 탐프라자투 6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12-31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251	엘로힘 엑티바상사	이**	구월남로 146, 428호 (구월동, 파티마오피스텔)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7-11-08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252	(주)웅진메디텍	이**	백범로227번길 28 (만수동, 천일빌딩 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8-11-03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351	진성	김**	문화서로 82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7-01-24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389	(주)홍전라이프	(주)홍전라이프 이프 한**	남동대로916번길 75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12-27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442	에덴건강관리	이**	장승남로 82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7-01-23	2019-01-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 662	웅구	전**	경인로 598 (간석동, 병규빌딩 1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6-10-24	2019-01-10

6.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2019. 01. 0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3

2018년12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12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1. 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8. 12. 27. ~ 2019. 01. 1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7-0199432	신아구대통령	장**	독곡로 48번길 6, 1층 109호(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8.01	2019.01.11
휴게음식점	2017-0200612	베러댄와플인천 서창점	김**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35, 1층 104호(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7.31	2019.01.11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1. 1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 453-2622

2018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12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일자 : 2018. 12. 28.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18. 12. 28. ~ 2019. 01.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에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0199914	김정문알로에	김**	담방로 45 (만수동, 희망프라자 1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16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6-0199471	유니베라 (논현대리점)	육**	도림동 294-8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1-03-07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8-0199568	비씨엠의료기남동지점	김**	구월로276번길 61 (구월동, 3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1-30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0199485	화랑아이엔티(I NT)	김**	매소홀로 1030, 104동 1902호 (만수동, 당방마을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7-10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0199568	주계원	주**	만수로 63, 4층 (만수동, 주산부인과 내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0-19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0199888	애니원 인천지사	강**	백범로 425 (간석동, 인예교육원 6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12-31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0199957	한불화장품부평지사	박**	만수서로 101 (만수동, 10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5-21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1-0199742	(주)자연에너지	(주)자연에너지 백**	남동대로921번길 29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8-12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1-0199919	아리따움 만수3지구점	김**	장승남로 52 (만수동, 10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08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1-0199981	대연테라 토피아	안**	성말로53번길 35-4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8-01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 -0199036	이노크리에이션	박**	호구포로899번길 8 (간석동, 두진아파트 101동 17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2-05-21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 -0199150	제이앤 제이상사	장**	도림북로19번길 19, 1층 (도 림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2-23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 -0199904	국제 에프앤에스	장**	만경로28번길 24, 206호 207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3-15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 -0199938	허브톡톡 다이어트클럽	최**	앵고개로815번길 70, 상가동 201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1단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10-16	2018-12-2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 -0200020	맘엔맘	박**	소래역로 94, 1107동 703호 (논현동, 단풍마을휴먼시아)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6-30	2018-12-28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032) 453-2623

2018년12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12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1. 14.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8. 12. 28. ~ 2019. 01.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법인명)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7- 0199598	동막셀프횃집	박**	만경로12번길24, 1층전부(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9-28	2019-01-14
일반 음식점	2016- 0199219	명량상회인천 CGV점	곽** 외1명	예술로198, 2층 228호(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10-24	2019-01-14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1. 1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032) 453-2624

2018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12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1. 14.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8. 12. 28. ~ 2019. 01.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품첨가 물제조업	1996- 0199495	동화산업	여**	남동서로53번길 96, A동 1층(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2-21	2019-01-14
휴 게 음식점	2017- 0200237	세븐일레븐 인천남동스타점	이**	은행로 26-11, A동 1층일부(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5-31	2019-01-14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1. 1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032) 453-2623

2018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60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2019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66,373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2,730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9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41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3,316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2,354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97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군·구별 개별고시)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6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81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77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 번길	81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215번길 81 기초구간에위치하여81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 길	9-1	2009. 11.16.	만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27번길 9-1 기초구간에위치하여9-1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64 -9	2009. 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8. 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 664-9 기초구간에위치하여664-9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09번 길	13- 13	2009. 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09번길 13-13 기초구간에위치하여13-13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8	2009. 11.16.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8. 12.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미래로 8 기초구간에위치하여8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77	2018.12.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	9-1	2018.12.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번길	21	2018.12.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